

삼척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제정(안)

의안 번호	17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5. 6.

제 출 자 : 삼 척 시 장

1. 제안이유

행정전산화사업추진으로 전산실설치 및 전산기기 확대보급에 따라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전산실운영조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이 조례는 시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계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(§1)
- 나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§2)
- 다.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토록함(§3)
- 라.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§4)
- 마.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§5)

3. 조례(안) 내용

- 별도 붙임

삼척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삼척시의 전자계산조직 및 관련기계 사용료(이하 "사용료"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"전자계산조직"이라 함은 입력, 제어, 기억, 연산 및 출력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보자료를 수학적,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이용기술을 말한다.
2. "관련기계"라 함은 전자계산조직에 직접 관련되는 입·출력장치, 보조기억장치, 단말장치와 보조기계를 말한다.

제3조(사용료) 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.

②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개발업무
2. 처리결과를 해당기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업무
3. 예상 외의 장애발생으로 인하여 기계 사용시간이 과다하게 계상된 업무
4.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사 용 료 징 수 기 준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산 정 기 준
기 계 사용료	렌 탈, 리 스	$\text{월당금액} \times \text{CPU사용시간} \div \text{월평균CPU사용시간}$
	구 매	$\text{구매가격} \div 5 \div 12 \times \text{CPU사용시간} \div \text{월평균CPU사용시간}$
인건비	시스템관리자 (SA) 프로그래머 (PG) 오퍼레이터 (OP)	(6급 10호봉) - 월평균급여 $\div 30 \times$ 작업일수
전 산 자 료 입 력 료 (1 타 (STROKE) 당)		(기능직 10등급 5호봉) - 월평균급여 $\div 30 \div 80,000$ 타 (STROKE)
소 모 품 비		실 비
계 잡 비		위 전체금액의 10%
여 비, 기 타		실 비

- ※ 비고
1. 월평균 CPU사용시간 = 전년도 월평균 CPU사용시간의 평균
 2. 월평균 급여 = 봉급 + 장기근속수당 + 전산수당 + 기말수당월평균액
+ 정근수당월평균액 + 직무수당
 3. 인건비 및 전산자료 입력료
 - 일반직 6급 10호봉 (근속년수 10년기준)
 - 기능직 10등급 5호봉 (근속년수 5년기준)
 4. 기계사용료
 - 리스(또는 렌탈) 계약만료후 소유권이전사용시 구매가격은 "최초계약당시 구입기준가격"으로 함.